

장학금지급시행세칙

2010.03.01. 제정	2010.09.01. 일부개정	2011.03.01. 일부개정	2011.12.07. 일부개정
2012.03.01. 일부개정	2012.06.01. 일부개정	2012.07.01. 일부개정	2012.08.01. 일부개정
2012.09.01. 일부개정	2013.02.01. 일부개정	2013.04.01. 일부개정	2013.09.01. 일부개정
2014.03.01. 일부개정	2014.03.02. 일부개정	2014.06.23. 일부개정	2014.08.01. 일부개정
2014.09.23. 일부개정	2014.10.21. 일부개정	2014.11.15. 일부개정	2015.04.08. 일부개정
2015.07.02. 일부개정	2015.07.29. 일부개정	2015.09.24. 일부개정	2015.10.30. 일부개정
2016.02.03. 일부개정	2016.03.02. 일부개정	2016.05.16. 일부개정	2016.08.02. 일부개정
2016.10.05. 일부개정	2016.10.24. 일부개정	2017.03.24. 일부개정	2017.05.31. 일부개정
2017.06.22. 일부개정	2017.08.27. 일부개정	2017.11.02. 일부개정	2017.12.22. 일부개정
2018.03.16. 일부개정	2018.05.23. 일부개정	2019.03.25. 일부개정	2019.06.20. 일부개정
2019.09.01. 일부개정	2020.04.22. 일부개정	2020.05.25. 일부개정	2020.07.22. 일부개정
2020.11.18. 일부개정	2021.02.25. 일부개정	2021.05.28. 일부개정	2021.07.08. 일부개정
2021.08.31. 일부개정	2021.11.17. 일부개정	2021.12.13. 일부개정	2022.02.21. 일부개정
2022.02.24. 일부개정	2022.04.01. 일부개정	2022.05.23. 일부개정	2023.01.19. 일부개정
2023.02.09. 일부개정	2023.04.21. 일부개정	2023.05.12. 일부개정	2023.07.07. 일부개정
2023.08.16. 일부개정	2023.09.01. 일부개정	2024.04.12. 일부개정	2024.10.17. 일부개정
2025.01.13. 일부개정	<u>2025.04.25. 일부개정</u>		

<학생 · 장학봉사팀>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학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지급 기본조건)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항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정규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8학기(5년제 10학기) 이내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편입생의 경우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 이내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단, 해당 장학별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1.3.1, 2011.9.1, 2011.12.7, 2012.9.1, 2013.9.1, 2014.3.1.)
- ②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이상(단, 해당 장학별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예외)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입생(편입생 포함)은 입학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며, 직전학기 통과과목(P/NP) 수강 등으로 성적산출이 불가할 경우 성적 산출된 최근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한다. (개정 2011.3.1., 2011.9.1., 2011.12.7., 2012.3.1., 2012.6.1., 2012.9.1., 2013.9.1., 2014.3.1., 2015.9.24., 2016.5.16., 2019.6.20.)
- ③ 두 종류 이상의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금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3.1., 2016.8.2.)

④ 교내 장학생 선발은 최초성적으로만 선정한다.(개정 2017.06.22)

⑤ 교내장학선발 이후 등록금 지원 교외장학이 발생하면 등록금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교내장학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제 3 조 (삭제 2016.8.2.)

①(삭제 2016.8.2.)

②(삭제 2016.8.2.)

제3조의 2 (초과수혜) 등록금 총액을 초과 할 수 있는 장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장학
 2. 글로벌장학
 3. 교환학생장학
 4. 특별장학
 5. 교외장학
 6. 마일리지장학
 7. 해외 현장실습(인턴십)장학(개정 2017.12.22.)
 8. STAR면학장학
 9. STAR동아리장학
 10. STAR활동장학
 11. STAR근로장학
 12. 저소득성적우수장학 (신설 2017.8.27.)
 13. 봉사장학F (개정 2021.11.17.)
 14. 나눔장학 (신설 2020.4.22.)
 15. 동명인학업지원장학 (개정 2022.02.24.)
- [본조신설 2016.8.2.]
16. 플러스장학 (개정 2024.10.17.)
 17. 동명문화학원 故강정남 총장 장학 (신설 2025. 1.13.)

제 4 조 (장학금의 이월 및 소멸) ① 미등록 휴학이나 자퇴, 제적되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한다.

②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한 자의 장학금(입학금장학제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월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0.4.22.)

1. 수업일수 1/3이전 : 장학금 전액 이월
2.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수업일수 1/2이전 : 장학금의 1/2 이월
3. 수업일수 1/2경과 후 : 이월불가

③ 수업일수 11주이전에 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이월하여 인정하고 11주 이후에는 이월이 불가하다. (신설 2020.4.22.)

④ 등록금 납부 후 자퇴 및 제적되는 경우 장학금은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이월 및 환불하지 않는다.(신설 2020.4.22.)

⑤ 학점제 등록의 경우 휴학 시 장학학점을 기준으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업료 전액장학은 복학 시 수강신청학점을 적용한다.(신설 2020.4.22.)

⑥ 학점제 등록의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된 장학학점보다 수강신청학점이 적을 경우 수강신청 학점만큼 장학금을 인정하며 나머지 장학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본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 1/2이월로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반올림하여 장학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20.4.22.)

[조 제목 개정 2020.4.22.]

제 5 조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격) 교내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지급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7., 2012.3.1., 2012.6.1., 2012.7.1., 2012.8.1., 2012.9.1., 2013.2.1., 2013.4.1., 2013.9.1., 2014.3.1., 2014.6.23., 2014.8.1., 2014.9.23., 2014.10.21., 2014.11.15., 2015.4.8., 2015.7.2., 2015.7.29., 2015.9.24., 2015.10.30., 2016.2.3., 2016.3.2., 2016.10.5., 2016.10.24., 2017.3.24., 2017.5.31., 2017.6.22., 2017.8.27., 2017.11.2., 2017.12.22., 2018.3.16., 2018.05.23, 2019.03.25, 2019.6.20., 2019.9.1., 2020.4.22., 2020.5.25., 2020.7.22., 2020.11.18., 2021.2.25., 2021.5.28., 2021.07.08., 2021.08.31., 2021.11.17., 2021.12.13., 2022.2.21.,2022.2.24.,2022.4.1.2022.05.23., 2023.01.19.,2023.02.09.,2023.04.21.,2023.05.12.,2023. 7. 7.,2023. 8.16.,2023.9.1., 2024.04.12.,2024.10.17.,2025.01.13.,2025.04.25.)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성적우수장학에 대한 경과조치)제5조 11호 외국어성적우수장학중 구HSK성적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1항 다호의 학과수석장학과 7항 동명가족장학은 2012년 3월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3. 재학생 장학 중 봉사장학의 성적기준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1.신입생 장학과 2.편입생 장학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명글로벌인재장학 관련 경과조치)본 개정 시행세칙 중 <별표 1>1.신입생 장학의 동명글로벌인재장학은 2014학년도 이전 동명글로벌인재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개정 전체입학수석장학 및 단대입학수석장학의 비고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③(편입별도반장학에 관한 경과조치)이 세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전에 입학한 편입생에 대한 편입장학C의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종전의 편입별도반장학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능성적우수장학 폐지 및 군사학장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수능성적우수장학을 지급받은 학생은 2014년 8월 1일자로 개정된 시행세칙 중 <별표 1>교내장학금 1.신입생 장학의 「군사학장학」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동명참인재장학 관련 경과조치)2015년 이전 입학자라도 2016년도 1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은 개정된 선발기준2를 적용한다. 개정 동명참인재장학 세부적용 학년은 다음 표의 적용연도를 따른다.

<표> 동명참인재장학 적용연도(아래 학년에 재학중인자, 복학생 포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016학년도	○			
2017학년도	○	○		
2018학년도	○	○	○	
2019학년도	○	○	○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3.재학생장학 균위탁장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어촌학생전형장학 관련 경과조치) 농·어촌학생전형장학을 적용받는 2018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농어촌학생 전형장학(개정), 특성화고동일계 전형장학(신설)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농어촌학생 전형장학 계속지급 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 입학생의 해당장학 계속지급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 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해당장학 계속지급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①과 ②의 대상자별 장학금액은 4년간(또는 5년간) 수업료 50%(단, 미래융합대학은 매학기 8학점)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UN평화장학은 위 시행일자로 폐지하며,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① 단, <별표1>의 편입장학A, B(개정) 및 편입장학C(폐지)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단, 제3조의 2(초과수혜) 개정 시행세칙에 따른 <별표1> 봉사장학A, B, C, D, E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편입장학C 폐지에 따라 이 세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전에 입학한 편입생에 대해 졸업 시까지 편입장학C의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① 단, <별표1>의 동명참인재장학A, B, C, D과 <별표2>의 「재학생 대비 동명참인재장학생 선발 배정표」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 단, <별표1>의 동명가족장학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동명가족장학 관련세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전 입학생에 대해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종전의 선발기준(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②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실습학기제장학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동계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지역사회인재장학II에 대한 개정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입학생(신입학, 재입학)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농어촌학생전형장학,동명장학,정시성적우수장학,수시성적우수장학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농어촌학생전형장학 계속지급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 입학생의 해당장학 계속지급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①의 대상자별 장학금액은 2년간 수업료 전액으로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TU대회수상장학D 장학, 재입학장학은 위 시행일자로 폐지하며, 위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장학종류별 경과조치는 <별표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2023학년도 1학기 장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며 2024학년도 신입생 장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며 2024학년도 신입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며, 2025학년도 신입생 장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며,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2.3.1. 2012.6.1. 2012.7.1., 2012.8.1., 2012.9.1., 2013.2.1., 2013.4.1., 2013.9.1., 2014.3.1., 2014.6.23., 2014.8.1., 2014.9.23., 2014.10.21., 2014.11.15., 2015.4.8., 2015.7.2., 2015.7.29., 2015.9.24., 2015.10.30., 2016.2.3., 2016.3.2., 2016.5.16., 2016.8.2., 2016.10.5., 2016.10.24., 2017.3.24., 2017.05.31., 2017.6.22., 2017.8.27., 2017.11.2., 2017.12.22, 2018.3.16., 2018.5.23., 2019.3.25., 2019.6.20., 2019.9.1, 2020.4.22., 2020.5.25., 2020.7.22., 2020.11.18., 2021.2.25., 2021.5.28., 2021.07.08., 2021.08.31., 2021.11.17., 2021.12.13., 2022.02.21., 2022.02.24., 2022.04.01., 2022.05.23., 2023.01.19., 2023.02.09., 2023.04.21., 2023.05.12., 2023.07.07., 2023.08.16., 2023.09.01., 2024.04.12., 2024.10.17. 2025.01.13. **2025.04.25.**)

교 내 장 학 금

1. 신입생 장학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전체입학 수석장학 (2025.4.25.)	선발기준 :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교과총 점이 전체 수석인 자 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 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다. 단, 계속지급기준을 미충족한 누적횟수가 3회가 되면 당해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4년(또는 5년)간 수업료 전액		입학팀
단대입학 수석장학 (2025.4.25.)	선발기준 :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교과총 점이 단과대학 수석인 자 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 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다.	1년간 수업료 전액		
군사학장학	폐지(2024.04.12.)			
수시 성적우수 장학	선발기준 : 입시부서에서 지정한 수시모집 전형별 최초합격자 중 학과(모집단위)별 전형총점이 상위 10%이내인 자(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단, 대상자가 1명 미만인 경우 1명으로 인정)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동명장학	선발기준 : 동명문화학원 산하 학교 출신자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TU대회 수상장학A	<p>선발기준: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대상수상자</p> <p>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1년간 수업료 전액		학생·장학 봉사팀
TU대회 수상장학B	<p>선발기준 :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금상수상자</p>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TU대회 수상장학C	<p>선발기준 :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은상수상자</p>	당해 학기 수업료 50%	당해학기 8학점 면제	
TU대회 수상장학D	(폐지 2023.3.1.)			
정시성적우수장학	폐지(2023. 4.21.)			
농어촌학생 전형 장학	<p>선발기준 : 농어촌 전형에 입학한 최종등록자 전원</p> <p>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p>경과조치 : 위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p> <p>* 종전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100%		입학팀
평생학습자장학	<p>선발기준 : 미래융합대학 입학생 전원</p> <p>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0학점이상 (4학년 6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p>경과조치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최대 11학점을 면제함.</p>	해당없음	4년간 매학기 최대 9학점 면제	
지역사회인재장학	폐지(2023. 4.21.)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특성화고동일계 전형장학 (신설 2021.05.28.)	선발기준 : 특성화고동일계 전형에 입학한 최종등록자 전원 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당해학기 수업료 100%		입학팀
지역사회 인재장학Ⅱ (개정 2022.02.24.)	폐지(2023. 4.21.)			입학팀, 학사관리팀
특기자전형 장학	선발기준 : 특기자전형에 입학한 최종등록자 전원 계속지급기준 : 전국대회 규모 3등(개인, 단체) 이상의 수상 실적이 있고 실적물을 제출한 자(학년별로 최근 1년간) 1년간 수업료 전액(2학년부터는 계속장학 지급기준 적용)	4년(또는 5년)간 수업료 전액	해당없음	입학팀
재직자장학	선발기준 : 재직자 신입생 중 입학부서에서 추천받은 자로서 해당장학 적용학기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자에 한함(개정 2024.04.12.)	1,2학년 수업료 40% 3,4(5)학년 수업료 50%		입학팀, 학사관리팀
기업연계교육 4년 전액 장학	선발기준 : ICT융합대학 5개 학과 (게임공학과, 게임그래픽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래자동차학과, 전기제어학부) 신입생전원 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계속지급기준을 미충족한 누적 횟수가 3회가 되면 당해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자에 한한다. 적용시기 : 2024학년도 신입생에게 적용한다.	4년간 수업료 전액	해당없음	입학팀 ICT융합대학
축구우수장학	선발기준 : 축구부에 소속된 자로 축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계속지급기준 : 전국대회 규모 16강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고 실적물을 제출한 자(학년별로 최근 1년간) ※ 선발인원 : 3명 ※ 전국규모대회(1,2학년대학축구대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추계대학축구연맹전) 1년간 수업료 전액(2학년부터는 계속장학 지급 기준 적용)	4년간 수업료 전액	해당없음	기획평가팀
	선발기준 : 축구부에 소속된 자로 축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계속지급기준 : 전국대회 규모 16강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고 실적물을 제출한 자(학년별로 최근 1년간) ※ 선발인원 : 3명 ※ 전국규모대회(1,2학년대학축구대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1,2학년대학축구연맹전, 추계대학축구연맹전) 1년간 수업료 50%(2학년부터는 계속장학 지급 기준 적용)	4년간 수업료 50%	해당없음	기획평가팀

2. 편입생 장학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편입장학A (개정 2021.11.17.)	선발기준 : 입학홍보팀에서 추천하는 입학학기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 3.0이상인자 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서 장학 적용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완료한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및 3-2학기 수업료 50%	해당없음	입학팀
편입장학B	선발기준 : 입학홍보팀에서 추천하는 입학학기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 성적 2.0이상인자 (개정 2021.11.17.)(개정 2023. 7.07.)	입학학기 수업료 50%	해당없음	
편입장학C	(폐지 2021.11.17.)	-	-	
편입장학D	선발기준: 미래융합대학 편입생 전원 계속지급기준: 직전학기 10학점이상(4학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자로서 장학 적용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완료한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과조치: 2026학년도(2024학번)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5학년도(2023학번) 편입생까지는 최대 11학점을 면제함	해당없음	2년간 매학기 최대 9학점 면제	

3. 재학생 장학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동명참인재장학A	선발기준 :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이며, 과목실적(F,NP), 수강철회 및 당해학기 전과한 이력이 없는 자로 직전학기 성적(90%), 직전학기 비교과성적(10%, 최대인정마일리지 10M, M·C·D영역별 최대 5M인정)을 종합심사하여 <별표2> 배점표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추천 선발된 자. (계약학과 제외) 단, 미래융합대학 및 Do-ing학부는 직전학기 이수 학점은 12학점 (4학년 6학점)으로 한다. (학기제 제외) ※ 종합점수 계산식 (직전학기 교과평점×0.9)+(직전학기 비교과 취득 마일리지 ×0.45×0.1)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 평점평균이 높은 자 나. 교과신청 학점수가 많은 자 다. 비교과 취득 마일리지 높은 자 라. 입학연도가 빠른 자 마. 연소자 순으로 선정함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단과대학 (학부)
동명참인재장학B		당해학기 수업료 50%	당해학기 8학점 면제	
동명참인재장학C		당해학기 수업료 25%	당해학기 4학점 면제	
동명참인재장학D		당해학기 수업료 20%	당해학기 3학점 면제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p>* 소속 학과별, 학년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칙 제34조 및 제35조에 근거하여 소속학과의 교육과정과 별도로 독립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총장이 선발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단, 외국인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부과정 외국인유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p> <p>* 학사조직 개편 등으로 통·폐합된 학부의 전공 배정 전 세부학과(전공)로 복학하는 경우 선발 대상을 학부로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p> <p>* 선발확정 이후에는 장학대상자를 변경(추가 등)할 수 없으며, 수혜학기 등록이전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전과 등 선발결격 사유 발생 시 장학자격과 장학금 소멸된다.</p> <p>* 장학선발 이후 등록금 지원 교외장학에 한하여 등록금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동명참인재장학 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p>			
동명복지장학A	<p>선발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p> <p>* 수혜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 평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07.08.)</p>	당해학기 수업료 50%	당해학기 8학점 면제	학생·장학 봉사팀
동명복지장학C	<p>선발기준 : 경제곤란자로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선발인원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p>* 수혜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 평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p>	당해학기 수업료 25%	당해학기 4학점 면제	단과대학 (학부)
가족장학	<p>선발기준 : 우리대학에 2촌 이내의 가족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상위 학년 자 1명 선발. 동일학년인 경우 연장자 1명 선발</p> <p>* 가족 모두가 장학금 지급 시기에 재학 중 이어야 한다.</p> <p>* 가족 모두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평점평균 2.5 이상이어야 한다.</p> <p>* 가족장학 수혜대상자가 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나머지 가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50%	당해학기 8학점 면제	학생·장학 봉사팀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봉사장학A	<p>선발기준 : 학생자치기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총학생회 정(부)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동아리연합회장)</p> <p>*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이수하고(미래융합대학 10학점(4학년 6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학생·장학 봉사팀
봉사장학B	<p>선발기준 : 학생자치기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대학(학부) 학생장, 학생복지위원장, 총대의원회 부의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통신원 단장 1명, 통신원 부장 1명</p> <p>*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이수하고(미래융합대학 10학점(4학년 6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65%	당해학기 10학점 면제	학생·장학 봉사팀
봉사장학C	<p>선발기준 : 학생자치기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대학(학부) 부학생장, 졸업준비위원장, 대외협력추진위원장,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신문방송국 국장, 정통신원 3명, 학생봉사단 단장</p> <p>*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이수하고(미래융합대학 10학점(4학년 6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50%	당해학기 8학점 면제	
봉사장학D	<p>선발기준 : 학생자치기구(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총학생회 부서장, 학생복지부위원장, 총대의원 국장4명), 학생봉사단 부단장, 동아리연합회 부서장 2명이내</p> <p>*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이수하고(미래융합대학 10학점(4학년 6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35%	당해학기 6학점 면제	
봉사장학E	<p>선발기준 : 학생자치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학과 학회장,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외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신문방송국 학생부장 4명 이내</p> <p>*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이수하고(미래융합대학 10학점(4학년 6학점)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30%	당해학기 5학점 면제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봉사장학F	<p>선발기준 : 학생자치회에 봉사하고 있는 자(학과별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모범이 되어 선발된 총대의원), 신문방송국 학생 정국원 및 수습국원 7명 이내</p> <p>*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p>	10만원 (참여도에 따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차등 지급)		
보훈장학	<p>선발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교육보호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p> <p>계속지급기준 : 이수학점에는 제한이 없고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로 정규학기(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이내 재학 중인 자. 단, 학생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초과학기 및 계절학기도 지급가능</p> <p>* 국가유공자 본인 외 학기 초과 장학금 및 자퇴 등으로 인한 보훈청 반환금은 학교가 부담한다.</p>	4년(또는 5년)간 수업료 전액		학생·장학 봉사팀
동명가족장학	<p>선발기준 : 우리대학교 및 동명문화학원 산하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및 직계자녀인 자</p> <p>*교직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 직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산학협력단 포함) <p>계속지급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13.) (개정 2024.10.17.)</p> <p>*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 또는 명예퇴직 시에도 정년까지 해당 학생의 학비를 지급한다.</p>	4년(또는 5년)간 수업료 전액		학생·장학 봉사팀
장기(해외) 실습학기제 (I,II) 장학	<p>선발기준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장기(해외)실습학기제(I,II)대상자</p>	수업료 20%	해당학기 3학점 면제	현장실습지원센터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장학	<p>선발기준 : 인턴십 운영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해외 인턴십 대상자</p>	왕복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보험료, 신체검사로 등의 실습비용 중 일정액		국제교류팀
글로벌장학	<p>선발기준 : 해외 어학연수, 글로벌프론티어, 버디 대상자로 선발된 자</p> <p>*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 해외어학연수 및 글로벌프론티어 : 일정액(국가별로 차등 지급)</p> <p>- 버디 : 일정액</p>		국제교류팀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교환학생장학	선발기준 : 본대학교에서 국내대학, 외국대학으로 교환학생대상자로 선발된 자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일정액		학사관리팀 국제교류팀
장애학생장학	선발기준 : 학생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수혜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업료 25%	당해학기 4학점 면제	장애학생지원센터
ROTC장학	선발기준 : 우리대학교 ROTC 지휘근무자, 성적우수자(군사학, 입영훈련), 학군단 봉사활동자로 타의 모범이 되며, 학군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군사교육단 훈육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 지급		학생군사교육단
마일리지장학	선발기준 :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이후 누적된 마일리지가 일정수준 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적립 마일리지당 일정액		Do-ing 교육혁신센터
근로장학	선발기준 :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 근로를 제공한 자 * 수혜학기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월별 지급이 가능하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월별 일정액		학생·장학봉사팀
플러스장학	선발기준 : 우리대학에 기부금(장학금) 유치한 교직원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자 * 지급비율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기부금(장학금)의 일정비율		학생·장학봉사팀
군위탁장학	선발기준 : 교육부와 군협약 체결에 의거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위탁생	수업료 50%	당해학기 8학점 면제	입학팀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STAR 변학장학	선발기준 : 교내 STAR사업을 통하여 성적이 향상된 자, 어학능력이 향상된 자, 자격증, 전공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 기타 학업관련 사업단의 추천을 받은 자 * 수혜학기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정액		대학혁신팀 단과대학
STAR 동아리장학	선발기준 : 교내 STAR사업관련 동아리 활동이 우수하여 사업단의 추천을 받은 자 * 수혜학기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정액		
STAR 활동장학	선발기준 : 교내 STAR사업관련 사업 활동에 참가율이 높거나 그 성과가 우수하여 사업단의 추천을 받은 자 * 수혜학기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정액		
STAR 근로장학	선발기준 : 교내 STAR사업관련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TA, 도우미 등) 한 자 * 수혜학기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월별지급이 가능하다.	월별 일정액		
실습학기제장학	선발기준 :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하여 하계·동계방학 중 시행되는 실습학기제 참여를 신청하고, 실습학기제 I·II·III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개정 2022.02.21.)	계절학기 수업료 전액		학사 관리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저소득성적우수 장학	선발기준 : 당해학기 소득분위 0~4구간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당해학기 30만원		학생·장학 봉사팀
나눔장학	선발기준 : 당해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분에 한함) 수혜 대상자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장학금 나눔을 희망하는 자. 단, 나눔을 받는 자를 지정 할 수 없다. * 나눔장학으로 조성된 재원은 밀알장학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경과조치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당해학기 교내장학 수혜금액의 25%		학생·장학 봉사팀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밑알장학	<p>선발기준 : 일시적 경제곤란이나 성적하락으로 학업유지가 어려운 자로 지도교수 및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p> <p>* 수혜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점 평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경과조치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p>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학생·장학 봉사팀
동명문화학원 故강정남 총장 장학	<p>선발기준: 품행이 단정하며 성적이 양호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p> <p>* 선발인원: 단과대학별 1~2명 선발하며 해당장학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소멸시 지급 불가)</p>	1인 1,000,000원		학생·장학 봉사팀

4. 외국인유학생 장학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외국인유학생장학	<p>선발기준 : 우리대학교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p> <p>*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일정액		국제 교류팀

5. 총장 특별장학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 (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특별장학	<p>선발기준 : 우리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양호한 자,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교위를 선양(수상, 자격취득, 언론보도, 시험합격 등)한 자, 총장,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p> <p>*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 수혜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균 평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p>	당해학기 일정액		학생·장학 봉사팀
재입학장학	(폐지 2023. 3.1.)			

6. 기타 교내장학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계속지급기준	장학금 지급기간 및 금액(학점)		관련 부서
		미래융합대외	미래융합대	
동명인학업지원장학	<p>선발기준 : 교비회계 교내장학금이 편성된 부서에서 업무절차를 통해 장학목적에 따라 지정한 선발기준 및 조건 등으로 선발된 자.</p> <p>* 해당장학은 학년도 교비회계에 속한 재원으로 편성 및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중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교내장학금 일체를 말하며, 장학명, 지급명목(등록금, 생활비, 1회성 포상, 근로대가성 등), 등록금 초과수혜 여부 등은 해당부서에서 장학목적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p>	일정액		관련부서

<별표 2> (개정 2015.7.2., 2016.3.2., 2021.12.13.)

재학생 대비 동명참인재장학생 선발 배정표

장학등급 재학생수	A	B	C	D	소계	비 고
6~9명	-	-	1	-	1	※ 재학생수 기준은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인원에 의하며, 학부의 경우 전공단위를 학과단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재학생 대비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함.
10~14명	-	1	1	-	2	
15~19명	1	1	-	-	2	
20~29명	1	1	-	1	3	
30~39명	1	1	1	2	5	
40~49명	1	1	1	3	6	
50~59명	1	1	2	4	8	
60~69명	2	1	2	4	9	
70~79명	2	1	3	5	11	
80~89명	2	1	3	6	12	
90~99명	2	1	4	7	14	
100~109명	2	2	4	7	15	
110~119명	2	2	5	8	17	
120~129명	3	2	5	8	18	
130~139명	3	2	5	10	20	
140~149명	3	2	6	10	21	
150명 이상	3	3	6	11	23	